[별지 제1호서식]

(앞 쪽)

001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흑색 펜으로 굵은선 안에만 기재

← 35 ㎜ →	
↑ 45 ㎜ ↓	※ 사진 •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귀가 보여야 함) • 밝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어두운 바탕 제외)**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 25㎜~35㎜)

접 수 번 호		신원조사접수번호	
접 수 년 월 일		신원조사회보일	
여 권 번 호		신 원 조 사 결 과	
발 급 년 월 일		여 권 유 효 기 간	

여권종류	☐ 일반 ☐ 거주 ☐ 관용 ☐ 외교관 여행증명서(☐ 왕복 ☐ 편도)
여권기간	☐ 10년 ☐ 5년 ☐ 5년미만 ☐ 단수(1년) ☐ 기간연장 재발급

※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기준이 되며 개명(改名)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본인(여권명의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영 문 (대문자)**	성			
		이 름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글			한 자(漢字)	
	남 편 성 **(영문대문자)**		남 편 성 (한 글)		※ 남편성은 필요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주민등록표상)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번지(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예정국		여행목적		직장명(직위)	
전화번호	자택 ( )	직장 ( )		휴대	- -
				e-mail	
본 적 지		호 주		관 계	

※ 긴급연락처는 해외여행중 각종 사고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국내 긴급연락처	성 명		관 계	전 화 (휴대전화)	( )
	주 소			직장(학교)명	

※ 여권명의인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친권자·후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		

여권명의인 서 명		※ 이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법정대리인

※ 해외거주중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주소								
영 주 권	번 호		구 여 권	번 호		거 주 지	입국일자	
	취득일			발급일			체류자격	

(뒷쪽계속)

※ 뒷쪽에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 120g/㎡}

002

(뒷 쪽)

위임장

본인은 여권법 제5조 및 여권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신청·여권수령 등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 위임자와의 관계 _____

주민등록번호 ☐☐☐☐☐☐-☐☐☐☐☐☐☐

대 행 업 체 명 _____ 전산코드 ☐☐☐☐☐☐ 접 수 시·군 ☐☐☐☐

※ 대리인이 여권 접수 및 수령시에는 본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여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 이 신청서상의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여권법 제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_____ 서명 _____

년 월 일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 하

특 기 사 항				영수(납입)필증 붙이는 난			
				영수필증		납입필증	
심사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 유 의 사 항

1.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합니다.
3.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여권발급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의 심사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단수여권(여행증명서 포함)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8.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무효로 처리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9. 발급된 후 6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10. 신청에서 수령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1주일정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됩니다.
11. 사증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事前)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이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명 기재요령

1.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 정정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하여 여권명의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영어 알파벳)로 음역(音譯)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 GILDONG, GIL-DONG)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210㎜×297㎜{보존용지 120g/㎡}